

부천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3년 8월 22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3년 8월 2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0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03. 8. 29) 상정
- 제10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03. 8. 29)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국제통상과장 이 중 훈)

가. 제안이유

- 부천시청 소속기관 등에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을 비롯한 5개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어 매년 근로기준법등 관련법에 의한 임·단협 교섭을 하고 있는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섭을 하기 위하여 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고문공인노무사의 자문범위를 정함(안 제2조)
 - 시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 분류 해결에 관한 사항
 - 기타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 위·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위촉은 2인 이내로 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함
 - 해촉은 사임 또는 업무수행 기피,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징계처분, 품위손상의 사례 발생시로 함
-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자문수당은 월 20만원 이내로 하고, 시가 위임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별도의 수입료를 지급함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input type="radio"/> 없음	<input type="radio"/>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없음

나. 반대토론

없음

5. 심사결과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부천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제169호
의결 년월일	2003. 9. 3. (제106회)

제출연월일 : 2003. 8. 22.

제출자 : 부천시장

□ 제안이유

- 부천시청 소속기관등에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을 비롯한 5개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어 매년 근로기준법등 관련법에 의한 임·단협 교섭을 하고 있는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섭을 하기 위하여 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고문공인노무사의 자문범위를 정함 (안 제2조)
 - 시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 기타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
 - 위촉은 2인 이내로 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함
 - 해촉은 사임 또는 업무수행 기피,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징계 처분, 품위손상의 사례발생시로 함
- 수당등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자문수당은 월 20만원 이내로 하고 시가 위임할 사안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수입료를 지급함

부천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고문공인노무사(이하“고문노무사”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범위)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 및 산하기관, 또는 시 투자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위·해촉) ①시장은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중인 자 중에서 2인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때
3. 공인노무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때
4.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제4조 (수당등지급) ①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20만원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문수당이외에 노·사관련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위임할 사안이 있을 때에는 상호협약하여 수입료를 결정한다.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